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울속도문화회관 신규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증원된 정원을 공무원 정원 총수에 반영하는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 “664명” 을 “680명” 으로 하며,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 “649명” 을 “665명” 으로 함(안 제2조)

나.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유예기간 연장방침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법정기한(2003. 2. 28)까지 연장함.

(조례 제461호 부칙안제3조 제3항)

3. 관련법령 및 조례

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다. 관보 제17624호 (2002. 6. 10자)

라.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및 부칙

4. 검토의견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을숙도문화회관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증원된 정원을 공무원 정원총수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총 664명을 680명으로 16명 증원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 649명을 665명으로 하여 문화회관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 '98년부터 추진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인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 7. 31까지 초과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2003. 2. 28까지 유예기간이 7개월 연장됨에 따라 부칙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조항을 두었고
- 앞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공연, 전시, 문화보급등 문화 예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부산권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의 접목기회를 확대해야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2002. 7.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 삼 립